보 도 참 고 자 료

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

• 미래창조 금융
• 따뜻한 금융
• 튼튼한 금융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			
책 임 자	남동우 신용정보팀장(2156-9604)	담 당 자	최상아 사무관(2156-9670)	
배 포 일	2015. 9. 8(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5매

제 목 :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1. 개 요

□ '15.9.8일 **국무회의**에서 「**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**(이하 '신정법') **시행령**」 **개정안 통과**

○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**신용정보법이 개정**('15.3.11. 공포, '15.9.12 시행)됨에 따라 **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,**

○ 기술신용정보의 근거 마련, 개인신용정보 동의방식 개선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2. 주요 내용

1 **(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관리 기준 마련)** 거래가 종료된 **신용정보의 처리 기준**,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시 **사전 동의 방식** 등 규정

①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**선택적 정보는 3개월 이내에 삭제**토록 하고, **필수적 정보**는 **분리 및 접근 통제** 하에 **5년까지만 보관** 허용

②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**최근 3년간** 자신의 **신용정보 이용·제공 내역을 조회**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

- 다만, **내부 경영관리, 반복적인 업무위탁** 등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**조회 대상에서 제외**

2 **(정보보호 책임성 강화)** 정보유출에 대한 **징벌적·법정 손해배상, 징벌적 과징금 도입** 등에 따른 **구체적 절차**와 **부과기준 마련**

○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**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***을 마련하고, **전자금융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**한 경우 신정법에 따른 책임을 다한 것으로 **인정**

* (은행·지주·집중기관·CB) 20억원 (보험·금투 등) 10억원 (기타) 5억원

3 **(금융회사 등의 자율성 확대)** 정보보호방식과 관련하여 기술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**금융·IT 융합과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** 조성

① **동의 및 본인 확인 시** 특정 방식(공인인증서·OTP 등)을 의무화하지 않고 **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법을 선택**

②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위한 필수적 정보 여부, 필수적 동의사항 여부 등을 **금융회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**

3. 향후 계획

□ 개정 「**신정법 시행령**」은 **'15.9.12일부터 시행**될 예정

< 붙임 : 신정법 및 하위규정(시행령, 감독규정 등) 개정 주요 내용 >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fsc.go.kr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신정법 및 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('15.9.12 시행)

1. 개인신용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 강화

(1) 개인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·처리 등 단계별 보호 강화

1 **(신용정보 수집 절차 개선, 영§ 28)** 개인신용정보(연체정보 포함)의 이용 및 제공시 개별 동의를 원칙으로 함(법 § 32)

① **[동의방법 개선]** 금융회사가 스스로 안전한 동의방식을 선택

- 아울러 신용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조회시스템 사용시 본인확인 방법도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결정토록 변경(영 § 30③)

현행 동의·본인확인 방식	개선안
서면, 공인전자서명, OTP등으로 한정	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 추가

② **[필수·선택 동의사항 구분]** 금융회사가 거래에 필수불가별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스스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*을 제시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구분(영 § 28⑧⑨)

* 동의사항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에 따라 제공되는 재화·서비스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필수 동의사항으로 분류

2 **(신용정보 보유관리강화, 영§ 17의2)** 금융거래 종료 후 보유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등 관리 강화(법 § 20의2, 규정 § 22의3)

1단계(금융거래 종료시)		2단계(종료 후)
필수정보 : 별도 분리 관리 선택정보 : 삭제	⇨	필수정보 : 5년 이내 삭제 영 § 17의2③ 정보* : 5년 이상 가능

* 법령의무이행,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휴면예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

3 **(처리 위탁 절차 강화, 영§ 14)** 처리 위탁시 수탁자에게 **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할 경우 암호화 등 보호조치*를 의무화**(법 § 17, 영 § 14④, 규정 § 15②)

○ 수탁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(영 § 14⑤)

4 **(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 개선, 규정 별표3) 개인신용정보**에 대한 **접근통제**와 **암호화 등 보안조치*** 강화(정무위 부대의견)

*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, 개인신용정보 전송시 암호화 조치, 위탁시 개인식별정보 비식별화 등

○ 보안 방식은 금융회사가 책임 하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**특정 보안 방식(예: 일방향 암호화)의 의무화는 폐지**(규정 별표 3)

5 **(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제도강화, 영§ 17)** 일정규모 이상 **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을 임원**(집행임원 포함)**으로 선임토록 의무화** (법 § 20③)

① **[의무화 대상]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조회회사**, 일정규모(총자산 2조원, 300인) 이상인 금융회사 등(약 90개사) (영 § 17②)

② **[임원의 범위]** 사내이사, 집행임원,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 등 (영 § 17③)

6 **(기록보존 의무강화, 영§ 16의2) 개인신용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폐기시 관련 기록*을 3년간** 보존하도록 의무화

* 수집·이용·제공·폐기 사유 및 근거 등

(2)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등 보호 강화

1 **(신용정보조회시스템, 영§ 30)** 신용정보주체가 **최근 3년간**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·제공내역을 조회*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(영 § 30①)

* 신용정보회사등은 동 내역을 7일 이내 시스템에 등록(규정 §39조의2)

2 **(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권 강화, 영§ 32)** 현행 동의 철회권 제한 기간(3개월)을 폐지하여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

3 **(신용정보 누설통지, 영§ 34의2)**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지체 없이*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(법 § 39의2)

* 다만,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고 추가 유출 방지 조치가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 통지가 가능토록 함(영 §34의2③)

○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가 누설될 경우 7일 이상 공시를 의무화(영 § 34의2④, 규정 § 제43조의4)

<붙 임>

2. 정보유출관련 권리구제 및 제재 강화

1 **(과징금 산정기준, 영§ 35의3)**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관련 **매출액의 3%까지 과징금 부과** 가능(법 §42의2)

○ **[산정기준]**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업무와 관련한 **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**을 기준으로 부과(영 §35의3①,②)

2 **(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, 영§ 35의9, 규정 § 43의7)**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자 및 의무화에 따른 가입기준* 마련

* 다만,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이 신용정보 유출을 함께 보장할 경우 가입기준 금액을 차감하여 중복 가입 부담을 완화

3 **(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, 영§ 38, 별표 4)** 위반행위별 제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

3.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업 개편

1 **(신용정보집중관리기관 집중관리 대상 정보의 범위, 영§ 21(별표 2), 규정§ 24의2(별표 6))** 집중관리 대상 신용정보의 범위를 통합하여 법령화

* (현행)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는 시행령 등에 법령화되어 있으나,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(생·손보, 여신, 금투)의 신용정보는 금융위 승인으로 운용 중

< 현 행 >

기관		집중관련 정보	근거
종합	은행연	신용도 판단정보 등	시행령 감독규정
개별	여 신	복수카드 정보 등	금융위 승 인
	생 보	보험계약정보,	
	손 보	보험금 지급정보 등	
	금 투	미수발생정보 등	
보험개발원		보험사기 방지정보 등	보험업 관련법령

⇨

< 개 정 >

기관	집중관련 정보	근거
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	좌 동	시행령 감독규정

2 **[공공성·중립성 제고, 영§ 21, 영§ 22의2]** 통합집중기관의 허가 요건으로 **공공성·중립성 요건**을 추가